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88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주철현·김병주·홍성국

양정숙 · 이용우 · 임호선

신현영 · 한준호 · 오영환

장철민 · 이원택 · 김민철

최혜영 · 임오경 · 김남국

이성만 • 이수진 • 윤영덕

정청래 · 장경태 · 오기형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

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 중 "구근"을 "알뿌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격리재배 검역) ① 식물검	제13조(격리재배 검역) ①
역관은 씨앗·묘목· <u>구근</u> 등	<u>알뿌리</u>
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	
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	
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	
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	
령으로 정하는 식물(이하 "격	
리재배대상식물"이라 한다)에	
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	
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	
배지(이하 "격리재배지"라 한	
다)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	
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	
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	
수 있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